

# 학교체육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09. 12.

제안자 : 교육과학기술위원장

##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학교스포츠클럽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므로 “학교스포츠클럽”에 대한 정의규정을 추가하고, 국가 등의 책무에 “학생선수 폭력근절 등 인권 보호”를 추가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학교운동경기부 지도자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부적절한 언행을 할 경우 학교의 장이 즉각 계약을 해제하도록 한 것을 학교운동경기부 지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생선수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하도록 수정함.

## 학교체육법안에 대한 수정안

학교체육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성장하는데”를 “성장하는 데”로 한다.

안 제2조제3호 중 “학생선수가 아닌 학생들의”를 “학생의”로, “진흥 사업을”을 “진흥사업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선수나 「국민체육진흥법」에”를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학교스포츠클럽”이란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동일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안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에 관한 시책을”을 “시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시책과 관련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강구할”을 “마련할”로 한다.

10. 학생선수 폭력근절 등 인권 보호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협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체육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안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를 “제3조제3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로, “취하여야”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체육교육 과정”을 “체육교육과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확보하여야”를 “학교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적절하게 확충하여야”를 “확충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적절하게 확보하여야”를 “확보하여야”로 한다.

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한 학교의 장은 평가결과를 교육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의 시기, 방법, 평가항목 및 절차, 평가결과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안 제8조제1항 중 “운영하는 정규”를 “정규”로 한다.

안 제9조제1항 중 “방과 후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스포츠 동아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을 “방과 후 학생들의 자율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로 한다.

안 제10조제1항 중 “정규수업 이수에 소홀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 감독하여야 하며, 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를 “정규수업을 이수하도록 감독하고 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설치하여 운영하여야”를 “설치·운영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감은”을 “학교의 장은”으로, “공식대회에 출전을 허락하여서는 안된다”를 “경기대회에 출전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학기중”을 “학기중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최저학력”을 “최저학력의”로, “학기중”을 “학기중 상시”로 한다.

안 제11조제2항 중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부를”을 “필요한 경비를”로, “예산은”을 “경비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격과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부적절한 언행 등을 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즉각 계약을 해제할”을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인격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을 경우 학생선수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안 제12조제2항 중 “선발, 교육·연수, 근무조건, 역할”을 “임용”으로 한다.

안 제13조제3항 중 “따라”를 “따른”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안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생들이 다양한 신체활동을 통

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체육”을 “학교체육”으로, “재원은”을 “경비를”로, “기금을”을 “기금으로”로 한다.

안 제15조제2항 중 “등에 대하여”를 “등에”로 한다.

안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지역사회와 협력) 학교의 장은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및 지역체육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안 제18조의 제목 “(권한의 위탁)”을 “(권한의 위임 및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항) 중 “이 법에 따른 학교의 장의 권한 중 제7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 업무의 일부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자격요건 등에 관하여”를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이나 전문기관·단체 등의 자격요건 등에”로 한다.

① 이 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안 부칙 제1조 중 “6개월이”를 “1년이”로 한다.

안 부칙 제2조 중 “「학교보건법」에”를 “「학교보건법」 제7조에”로, “학생건강체력평가에 포함시켜 실시한다”를 “실시하는 학생건강체력평가로 대체한다”로 한다.



다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  
하며, 교육감이 인정하는 체  
육특기자를 포함한다.

<신 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야 한다.

1.~9. (생략)

<신 설>

10.~13. (생략)

②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교  
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은 제1항의 시책과 관련한 학

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  
조와 제34조에-----

-----  
-----  
-----  
-----  
-----.

6. “학교스포츠클럽”이란 체육  
활동에 취미를 가진 동일학  
교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자  
율적으로 운영되는 스포츠클  
럽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  
-----  
-----  
-----  
-----  
-시책을-----

1.~9. (원안과 같음)

10. 학생선수 폭력근절 등 인  
권 보호

11.~14. (원안 제10호부터 제  
13호까지와 같음)

② -----  
-----  
-----

교체육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라 학교가 체력증진을 위한 별도의 시책을 강구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협조) 제3조에 따른 시책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의 조치)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③ (원안과 같음)

④ -----

-----마련할-----

제4조(협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체육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학교의 조치) ① -----  
-----제3조제3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

1. 체육교육 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 제고

2.~10. (생략)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수행하여 성과가 탁월한 학교와 교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기반 시설을 적절하게 확충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육활

-----하여야-----

--.

1. 체육교육과정-----

2.~10. (원안과 같음)

② -----

-----학교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삭 제>

<삭 제>

제6조(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① -----

-----확충하여야-----.

② -----

동 진흥에 필요한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을 적절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

① (생략)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한 학교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측정 결과를 교육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의 시기, 방법, 측정 항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건강체력교실 등 운영) ①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에서 저체력 및

-----  
-----  
-----확  
보하여야-----.

제7조(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

① (원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한 학교의 장은 평가결과를 교육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의 시기, 방법, 평가항목 및 절차, 평가결과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8조(건강체력교실 등 운영) ①

-----  
-----

비만관정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체력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정규 또는 비정규 프로그램(이하 “건강체력교실”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  
-----  
-----  
-----정규-----  
-----  
-----  
-----  
-----

② (생략)

제9조(학교스포츠클럽) ① 학교의 장은 방과 후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스포츠 동아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원안과 같음)

제9조(학교스포츠클럽) ① -----  
-----방과 후 학생들의 자율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

② (생략)

제10조(학교운동경기부 운영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정규수업 이수에 소홀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 감독하여야 하며, 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원안과 같음)

제10조(학교운동경기부 운영 등) ① -----  
-----정규수업을 이수하도록 감독하고 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학교운동경기부를 육성하는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인격을 존중하고, 학교운동경기부 내 폭력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여 명량한 학교스

② -----  
-----  
-----  
-----





부 지도자의 자격기준 및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필요한-----  
-----.

제12조(스포츠강사의 배치) ① (생략)  
② (생략)

제12조(스포츠강사의 배치) ① (원안과 같음)  
② -----

제1항에 따라 배치된 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선발, 교육·연수, 근무조건,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임용-----  
-----  
-----.

제13조(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①·② (생략)

제13조(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①·② (원안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유치원 및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체육활동 프로그램 위탁운영의 자격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따른-----  
-----  
-----  
-----  
-----  
-----필요한-----  
-----  
-----.

제14조(재원의 확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들이 다양한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체육

제14조(재원의 확보) ① -----  
-----  
-----학교체육-----  
-----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은 예산 외에 다음 각 호의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1.~4. (생략)

②·③ (생략)

제15조(학교체육진흥위원회 등)

① (생략)

②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및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7조(지역사회와 협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및 지역체육단체와의 협

-----경비를-----

-----기금으로-----

1.~4. (원안과 같음)

②·③ (원안과 같음)

제15조(학교체육진흥위원회 등)

① (원안과 같음)

② -----

-----등에-----

③ (원안과 같음)

제17조(지역사회와 협력) 학교의 장은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및 지역체육단체 등에 협력을 요

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및 지역체육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권한의 위탁) <신 설>

① 이 법에 따른 학교의 장의 권한 중 제7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 자격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청할 수 있다.

제1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 업무의 일부를-----  
-----  
-----.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이나 전문기관·단체 등의 자격요건 등에-----  
-----.

부칙

제1조(시행일) -----

<p><u>6개월이</u>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u>1년이</u>----- -----.</p>
<p>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u>학교보건법</u>」에 따른 건강검사에서 신체의 능력검사는 이 법 제7조에 따라 <u>학생건강체력평가에 포함시켜 실시한다.</u></p>	<p>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u>학교보건법</u>」 제7조에----- ----- ----- -----<u>실시하는 학생</u> <u>건강체력평가로 대체한다.</u></p>

**학교체육법안**  
(안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637
----------	------

발의연월일 : 2009. 1. 23.

발 의 자 : 안민석·김춘진·권영진

박보환 · 조전혁 · 임해규

장세환 · 박은수 · 최문순

강기정 · 김영진 · 양승조

김재운 · 최재성 · 천정배

의원(15인)

제안이유

학교체육은 체육이라는 특정교과에 국한되지 않고, 학교 안에서 행해지는 학생들의 다양한 신체활동 모두를 포함하며, 지-덕-체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교육의 핵심 영역임. 학교체육은 국가 미래주역인 청소년을 건전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토록 견인하는 역할을 하며, 청소년기의 체력수준은 성인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그러나 입시위주 교육으로 체육 활동은 경시되어 청소년 체력저하가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반면, 그 동안 학교체육에서 주요한 관심사가 되어 왔던 엘리트체육은 금메달 지상주의에서 기인한 비교육적·반인권적 훈련문화와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및 인권침해로 인하여 존립기반이 흔들리고 있음.

이에 학교체육법을 제정하여, 일반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진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과 함께,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학교 운영계획에 학교체육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포함시키고 이를 관할 감독기관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조).

나.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의 조치를 명시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5조).

다.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하고, 저체력 및 비만학생에게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학교의 장은 방과 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스포츠 동아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다. 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생선수가 일정 학력수준에 미달할 경우 대회 출전을 제한하도록 함(안 제10조).
- 바.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운동부 지도자 급여를 학교회계에서 지급하도록 함(안 제11조).
-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 및 장애학생에 대하여 적절한 체육활동을 운영하도록 함 (안 제13조).

## 학교체육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적절하고 고른 체육활동 및 교육기회를 갖도록 하여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지닌 미래의 국가 주역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체육”이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제반의 체육활동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1교 1기”란 학생의 체육활동 장려를 위해서 학교에서 실시하는 특정 종목 진흥사업을 말한다.
4. “학교운동경기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
5. “학생선수”란 학교운동경기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하며, 교육감이 인정하는 체육특기자를

포함한다.

6. “학교스포츠클럽”이란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동일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학교체육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조치
3. 체육교재·교구·프로그램의 연구개발·보급 및 지원
4. 제11조에 따른 학교운동경기부 지도자 및 제12조에 따른 스포츠 강사의 연수 및 자질 향상
5. 학교운동장·체육관 등 체육활동 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
6. 체육관련 체험교육 및 수련활동 지원
7. 저체력 학생을 위한 시책사업 지원
8. 제9조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의 운영 및 체육행사의 개최와 지원
9.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최저학력 기준 설정·운영
10. 학생선수 폭력근절 등 인권 보호
11. 제16조에 따른 학교체육진흥연구기관의 지원
12.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체육단체와의 협력
13. 유아 및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지원
14.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매년 학교운영계획에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포함시키고 이를 추진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관할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학교가 체력증진을 위한 별도의 시책을 마련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협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체육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학교의 조치) ① 학교의 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 제고
2. 제9조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및 방과 후 체육활동 지원
3. 학교 간 경기대회 등 체육 교류활동 활성화
4. 운동회 또는 체육대회의 정기적 실시
5. 제7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 결과 저체력 및 비만학생에 대

## 한 대책

6.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

7. 1교 1기 및 1인 1운동 프로그램 운영

8. 교원의 체육관련 직무연수 장려

9. 스포츠 경기관람 프로그램 운영

10. 그 밖에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학교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육활동 진흥에 필요한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건강체력 상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매년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한 학교의 장은 평가결과를 교육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의 시기, 방법, 평가항목 및 절차, 평가결과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건강체력교실 등 운영) ①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학생건강 체력평가에서 저체력 및 비만관정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체력증진을 위하여 정규 또는 비정규 프로그램(이하 “건강체력교실”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체력교실 등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학교스포츠클럽) ① 학교의 장은 방과 후 학생들의 자율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경우 교원 중 1인 이상을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학교운동경기부 운영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정규수업을 이수하도록 감독하고 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학교운동경기부를 육성하는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인격을 존중하고, 학교운동경기부 내 폭력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여 명량한 학교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선수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체육단체 등에서 개최하는 경기대회에 출전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안 된다.

④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중

에는 상시 합숙훈련을 금지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최저학력의 기준 및 실시 시기와 제4항에 따른 학기중 상시 합숙훈련 금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학교운동경기부 지도자)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훈련과 지도를 위하여 학교운동경기부에 지도자(이하 “학교운동경기부 지도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동경기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중 학교운동경기부 지도자의 급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경기부 지도자 임용에 필요한 경비를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경기부 지도자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인격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을 경우 학생선수 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학교운동경기부 지도자의 자격기준 및 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스포츠강사의 배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 수업 흥미 제고 및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에 따라 각급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유치원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유아 및 장애인 단체나 체육단체, 대학의 체육학과 계열, 교습학원,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유치원 및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체육활동 프로그램 위탁운영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재원의 확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

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 외에 다음 각 호의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1.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
2.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
3.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4. 그 밖에 학생 및 아동·청소년에 적용되는 기금의 일체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기금을 사용할 경우 그 범위와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

1.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

2. 제7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

3. 제11조에 따른 학교운동경기부 지도자 배치

4. 제12조에 따른 스포츠강사 배치

③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기금의 운용주체는 국가가 제2항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요청할 경우 기금의 가용재원의 범위에서는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요청받은 기금의 집행은 운용주체가 사업지원 방식으로 한다.

제15조(학교체육진흥위원회 등) ①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를, 시·도 및 시·도교육청과 시·군·구 및 지역교육청 소속하에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및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학교체육진흥연구기관의 지정)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체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학교체육진흥연구기관으로 지

정할 수 있다.

1.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2.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학생 체력통계의 체계적 수집 및 분석
  4. 제7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의 종목·평가기준 등 지표 개발
  5. 제7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의 시스템 개발 및 운영
  6. 교원, 학교운동경기부 지도자 등의 연수
  7.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체육진흥연구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진흥연구기관이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지역사회와 협력) 학교의 장은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및 지역체육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 업무의 일부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이나 전문기관·단체 등

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보건법」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 중 신체의 능력검사는 이 법 제7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건강체력평가로 대체한다.